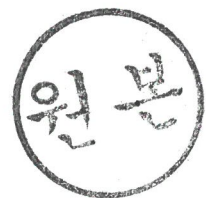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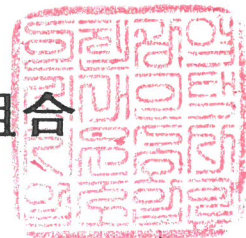
西紀 1998年 1月 15日 制定施行

西紀 1999年 9月 8日 改定施行

獎學金 支給 規定



仁川廣域市個人택시運送事業組合



- 제 1 조 (목 적)
- 제 2 조 (장학위원회)
- 제 3 조 (위원회의 구성)
- 제 4 조 (위원회의 기능)
- 제 5 조 (위원회의 회의)
- 제 6 조 (장학금의 종류)
- 제 7 조 (장학생의 자격)
- 제 8 조 (장학생의 선정 기준)
- 제 9 조 (장학생의 선정)
- 제 10 조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금액)
- 제 11 조 (장학금 지급 기간)
- 제 12 조 (장학생의 선정시기)
- 제 13 조 (장학자격의 상실)
- 제 14 조 (기 타)
- 제 15 조 (시 행 일)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자녀중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장학위원회)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의 공정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3 조 (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조합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조합의 이사 및 감사가 된다.
-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조합의 전무이사를 간사로 한다.

제 4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장학생 선발 및 그 기준에 관한 사항.
-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 ③ 장학금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장학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5 조 (위원회의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제적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입학금, 수업료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및 기타 장학금으로 한다.

제 7 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의 자격은 조합원 자녀중 중,고등학교 및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로 한다.

1. 조합 정관 및 제규정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의 자녀.
2.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곤란하며 품행이 단정한 자.
3. 기타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고 위원회위원 전원이 찬성 결의한 자.

제 8 조 (장학생의 선정 기준)

장학생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9 조 (장학생의 선정)

- ① 장학생의 선정은 당해년도 책정된 예산 및 정원에 맞게 위원회에서 장학생 기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선정한다.
- ② 장학생이 선정 인원을 초과하여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정하여 결정한다.

제 10 조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금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금액은 위원회에서 매년도마다 조정하여 책정한다.

제 11 조 (장학금 지급기간)

장학금의 지급은 1학기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급할수 있다.

제 12 조 (장학생의 선정시기)

장학생의 선정은 매학기초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3 조 (장학자격의 상실)

장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1. 휴학자.
2. 제적 또는 자퇴자.
3. 징계처분 또는 학사경고를 받은 자.
4. 학업성적이 불량한 자.
5. 사상이 불건전하거나 품행이 불량한 자.
6. 장학금 지급 전에 장학생의 해당조합원이 사업면허를 양도 하였을 때.
7. 기타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자.

제 14 조 (기 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장학위원회에서 의결한다.

부

칙

제 15 조 (시 행 일)

본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1999년 9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